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가합506081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나205780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가합506081 판결

전문

원고한국무역보험공사

원고보조참가인1. 주식회사 하나은행

2.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주식회사 태우

4. 원일전선 주식회사

5. C

변론 종결2016. 6. 29.

판결 선고2016. 7. 20.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8,437,034,504원 및 그 중 2,059,132,13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5.부터, 6,371,177,747원에 대하여는 2014. 12. 11.부터,

나.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065,856,757원 및 그 중 2,059,132,130원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각 2015. 3. 10.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4. 2.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4. 3. 7. 접수 제37835호로 경로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태우, 원일전선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태우, 원일전선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지연손해금 부분 중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2.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주식회사 태우 사이에 2013. 8.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태우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금지급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원일전선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금지급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를 이행하라.

3.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무역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하나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이하 '참가인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은 은행법이 정하는 은행업 및 채무의 보증을 비롯한 은행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참가인 포스코건설'이라고 한다)은 토목건축공사업, 제철공장 등의 건설, 각종 설비의 설계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은 전선제조 및 판매업, 전선 수출입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표이사는 피고 B이다.

4) 피고 주식회사 태우(이하 '피고 태우'라고 한다)는 비철금속 주조, 피복동선 탈피 및 분쇄제조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원일전선 주식회사(이하 '피고 원일전선'이라고 한다)는 전선제조 및 판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참가인 포스코건설과 피고 A의 A·B전선납품계약의 체결 등

- 1) 참가인 포스코건설은 브라질 내 E 건설공사를 수주하였다.
- 2) 참가인 포스코건설은 2013. 5. 9. 피고 A으로부터 전력용 전선 등을 납품받기로 하면서 '계약목적 F 단가계약(A군), 계약금액 36,951,669,942원, 계약기간 2013. 5. 9.부터 2014. 7. 30.까지, 인도조건 FOB [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 국내지정항구], 선급금 7,390,333,988원(계약금액의 20%), 계약보증금 3,695,166,994원(계약금액의 10%)'으로 정하여 전선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A납품계약'이라고 한다).
- 3) 또한, 참가인 포스코건설은 2013. 5. 9. 피고 A으로부터 통신용 전선 등을 납품받기로 하면서 '계약목적 F 단가계약(B군), 계약금액 63억 원, 계약기간 2013. 5. 9.부터 2014. 7. 30.까지, 인도조건 FOB(국내지정항구), 계약보증금 6억 3,000만 원(계약금액의 10%)'으로 정하여 전선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B납품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 참가인 하나은행, 피고 A의 제1·2지급보증약정 및 제1·2수출보증보험계약 체결 등

- 1) 피고 A과 참가인 하나은행의 제1·2지급보증약정 등 가) 피고 A은 2013. 6. 7. 참가인 하나은행과, 피고 A의 참가인 포스코건설에 대한 이 사건 B납품계약상 계약이행채무에 관하여 지급보증금액은 이 사건 B납품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인 6억 3,000만 원, 보증기간은 2014. 7. 30.까지로 정하여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지급보증약정'이라고 한다).

나) 피고 A은 2013. 6. 7. 참가인 하나은행과, 피고 A의 참가인 포스코건설에 대한 이 사건 A납품계약상 계약이행채무에 관하여 지급보증금액은 이 사건 A납품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인 3,695,166,994원, 보증기간은 2014. 7. 30.까지로 정하여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지급보증약정'이라고 한다).

다) 참가인 하나은행은 2013. 6. 7. 이 사건 제1·2지급보증약정에 따라 참가인 포스코건설 앞으로 각 지급보증금액 6억 3,000만 원 및 3,695,166,994원으로 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 2) 참가인 하나은행과 원고의 제1·2수출보증보험계약 등 1) 가) 참가인 하나은행은 2013. 6. 5. 원고와, 이 사건 제1지급보증약정에 따른 참가인 하나은행의 참가인 포스코건설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채무에 관하여 보험금액은 6억 3,000만 원(지급보증금액 및 보험가액 각 6억 3,000만 원, 부보율 100%), 보험기간은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수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수출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참가인 하나은행은 2013. 6. 5. 원고와, 이 사건 제2지급보증약정에 따른 참가인 하나은행의 참가인 포스코건설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채무에 관하여 보험금액은 3,695,166,000원(지급보증금액 3,695,166,994원, 보험가액 3,695,166,000원, 부보율 100%), 보험기간은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수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수출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6. 7. 이 사건 제1·2수출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참가인 하나은행 앞으로 각 보험금액 6억 3,000만 원 및 3,695,166,000원으로 된 수출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주었다.

라. 원고, 농협은행, 피고 A의 지급보증약정 및 수입보험계약 체결 등

1) 피고 A과 농협은행의 지급보증약정 등 피고 A은 2013. 6. 19.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한다)와, 피고 A의 수입신용장 발행에 따른 신용 공여, 수출입대금 채무 등에 관하여 지급보증한도금액은 미합중국 200만 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 보증기간은 2014. 6. 16.까지로 정하여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농협지급보증약정'이라고 한다).

2) 농협은행과 원고의 수입보험계약 등 가) 한편 농협은행은 2013. 6. 17. 원고와, 이 사건 농협지급보증약정에 따른 농협은행의 지급보증채무에 관하여 인수한도는 200만 달러, 보험기간은 2014. 6. 16.까지로 정하여 수입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농협수입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농협수입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17. 이 사건 농협수입보험계약에 따라 농협은행 앞으로 인수한도 200만 달러로 된 수입보험증권을 발급해 주었다.

마. 피고 A의 당좌부도 및 제1근저당권설정 등

1) 피고 A의 당좌부도 가) 피고 A의 유동성 부족으로 2013. 8. 1. 당좌부도가 발생하였다.

나) 참가인 하나은행은 2013. 8. 5.자 수출보증보험 위험발생통지서로써 원고에게 피고 A의 2013. 8. 1.자 당좌부도 사실과 함께 피고 A의 자구노력 등 이행상황을 관찰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2) 피고 A의 피고 태우에 대한 제1근저당권설정 등 가) 피고 A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분(661/1,501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8. 14. 피고 태우와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태우에게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3. 8. 16. 접수 제126996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태우,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피고 A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

3) 피고 원일전선으로의 제1근저당권 일부이전 피고 태우는 2013. 10. 2. 피고 원일전선에게 같은 날짜 계약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바. 피고 A에 대한 Fast Track 프로그램 실시 등

1) Fast Track 프로그램 자율협의회 구성 및 피고 A에 대한 상환유예 등 가) 「중소기업 "Fast Track 프로그램" 공동운영지침」(2012. 8. 31. 10차 개정된 것, 이하 'FTP 지침'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Fast Track 프로그램(이하 'FTP'라고 한다)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상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거래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채권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여(제1조), FTP 대상으로 선정된 A등급 기업(채권은행 자체 FTP) 또는 B등급 기업(자율협의회 공동 FTP)에 대하여 만기연장, 신규자금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제2조 제2호, 제8조), 여기서 A등급 기업은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을, B등급 기업은 KIKO 등 통화옵션거래 손실 또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등의 사유로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을 의미하고, 반면 C등급 기업은 부실징후기업으로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D등급 기업은 부실징후기업으로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의미한다(제6조 제1 내지 4호).

나) 피고 A에 대한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채권액에 비례하는 최초의결권 30%), 채권은행인 농협은행(최초의결권 13.5%), 참가인 하나은행(최초의결권 12.5%)을 비롯한 채권은행들은 2013. 8. 30. FTP 지침 제2조 제4호, 제8조에 따라 Fast Track 프로그램 자율협의회(이하 'FTP 자율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였고, 제1차 FTP 자율협의회는 같은 날 B등급 기업으로서 FTP 대상으로 선정된 피고 A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고 A의 대출채무 및 한도거래 여신(수입 L/C, 매입외환, 무역금융, 보증 등) 중 2013. 8. 30.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의결하였다.

2) 피고 A에 대한 실사보고서 삼일회계법인은 2013. 11.경 FTP 자율협의회에게 2013. 8. 기준 피고 A의 자산총계는 1,500억 5,300만 원, 부채총계는 1,103억 원, 자본총계는 397억 5,300만 원이고, 피고 A은 자산 매각(공장 부지 등) 및 관계사 대여금 회수 등을 통한 자구계획안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실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 A에 대한 이행성보증 지원 의결 등 가) 피고 A은 2013. 11.경 FTP 자율협의회에게 이 사건 A납품계약의 선급금 7,390,333,988원 중 약 30%인 22억 2,000만 원 상당의 피고 A의 참가인 포스코건설에 대한 선급금환급채무에 관하여 이행성보증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한국산업은행은 2013. 11. 29. 이 사건 A납품계약의 선급금 7,390,333,988원 중 향후 원고가 수출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게 될 70%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0% 부분(위 선급금의 약 30%에 해당하는 22억 1,800만 원)에 관하여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단독으로 신규 이행성보증을 지원하되, 손실 발생시 채권은행별 채권액에 비례하여 손실을 분담하기로 하는 안건을 부의하였고, 제3차 FTP 자율협의회는 2013. 12. 5. 피고 A이 매출대전 회수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 안건을 의결하였다.

4) FTP 실시 중 원고, 참가인 하나은행, 피고 A의 제3지급보증약정 및 제3수출보증보험계약 체결 등

가) 피고 A과 참가인 하나은행의 제3지급보증약정 등

(1) 피고 A은 2013. 12. 11. 참가인 하나은행과, 피고 A의 참가인 포스코건설에 대한 이 사건 A납품계약상 선급금환급채무에 관하여 지급보증금액은 이 사건 A납품계약의 선급금 상당인 7,390,333,988원, 보증기간은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지급보증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3지급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참가인 하나은행은 2013. 12. 11. 이 사건 제3지급보증약정에 따라 참가인 포스코건설 앞으로 지급보증금액 7,390,333,988원으로 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나) 참가인 하나은행과 원고의 제3수출보증보험계약 등

(1) 참가인 하나은행은 2013. 12. 11. 원고와, 이 사건 제3지급보증약정에 따른 참가인 하나은행의 참가인 포스코건설에 대한 선급금환급보증채무에 관하여 보험금액은

5,173,233,000원(지급보증금액 7,390,333,988원, 보험가액 7,390,333,000원, 부보율 70%),

보험기간은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수출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3수출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12. 11. 이 사건 제3수출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참가인 하나은행 앞으로 보험금액 5,173,233,000원으로 된 수출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주었다.

사. 원고의 농협수입보험계약에 관한 사전구상금 지급통보 및 그 유예 등

1) 농협은행은 2013. 12. 24.자로 원고에게, 피고 A의 같은 날 만기도래한 유산스(G, 이하 '이 사건 제1유산스'라고 한다) 대금을 대지급하였고, 2014. 1. 14. 만기도래하는 유산스(H, 이하 '이 사건 제2유산스'라고 한다) 대금을 대지급할 예정으로서, 이 사건 농협수입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로서 1,871,387.14달러의 손실이 예정된다는 내용의 수입보험 사고발생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3. 12. 26. 피고 A에게 이 사건 농협수입보험계약 제5조 제1항 제8호2)에 따른 사전구상으로서 2014. 1. 10.까지 1,871,387.14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으로 통보하였다.

3) 한국산업은행은 2014. 1.경 원고에게 피고 A와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련 조치 등을 일단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 보험사고 관련 채권보전조치 등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아.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제2근저당권설정

피고 B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2. 20. 피고 C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4. 3. 7. 접수 제37835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9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자. 피고 A에 대한 Fast Track 프로그램 중단 등

1) 참가인 하나은행은 2014. 3. 10.자로 원고에게 피고 A이 기업일반자금회전대출 약 29억 9,700만 원에 관하여 14일 이상 이자연체를 하여 FTP의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는 내용의 수출보증보험 위험발생통지를 하였다.

2) 참가인 하나은행은 2014. 7. 23.자로 원고에게 재차 위 대출의 이자연체에 관한 수출보증보험 위험발생통지를 하였다.

3) 피고 A에 대한 FTP는 2014. 9. 26.경 중단되었다.

차. 원고의 보험금 지급 등

1) 참가인 하나은행 및 농협은행의 보험금 지급청구 등 가) 참가인 하나은행은 원고에게, 2014. 8. 19.자로 참가인 포스코건설이 이 사건 A·B납품계약을 해지하고 참가인 하나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제1·2·3지급보증약정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및 선급금환급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참가인 하나은행이 위 각 보증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제1·2·3수출보증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수출보증보험 사고발생통지를 하였고, 이후 2014. 10. 21.자로 이 사건 제1수출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 629,997,688원, 이 사건 제2수출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 3,667,499,537원, 이 사건 제3수출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 2,073,680,522원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다.

나) 농협은행은 원고에게, 2014. 9. 29.자로 피고 A이 2013. 12. 24. 및 2014. 1. 14. 각 만기도래하는 이 사건 제1·2유산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농협은행이 이를 각 대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농협수입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수입보험 사고발생통지를 하였고, 이후 2014. 10. 14.자로 이 사건 농협수입보험계약상 보험금 2,082,636,414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원고의 농협은행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 원고는 2014. 10. 24. 농협은행에게 이 사건 농협수입보험계약이 정한 보험금 2,059,132,130원을 지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채권보전비용으로 6,724,627원을 지출하였다.

3) 원고의 참가인 하나은행에 대한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4. 12. 10. 참가인 하나은행에게 이 사건 제1수출보증보험계약이 정한 보험금 629,997,688원, 이 사건 제2수출보증보험계약이 정한 보험금 3,667,499,537원, 이 사건 제3수출보증보험계약이 정한 보험금 2,073,680,522원, 합계 6,371,177,747원을 지급하였다.

4) 연체이율 및 연체이율 적용시점 이 사건 제1·2·3수출보증보험계약 및 농협수입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원고의 국내보상요령 제30조 제1항은 원고의 보험금 회수업무와 관련하여 '연체금 산정시 적용할 연체이율은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연 11%,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연 14%, 대기업에 대하여는 연 17%로 한다'고 정하고, 제31조는 '연체이율 적용시점은 보험금지급일 익일 내지 보증채무이행일 익일'이라고 정하고 있다.

카. 제1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및 제2근저당권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

1) 제1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및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 가) 피고 태우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7. 수원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4. 5. 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

나) I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1. 15.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5. 2. 24. 매각대금 2억 5,300만 원을 완납하였고, 2015. 3. 6.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2. 2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실제배당할 금액 248,892,503원 중 화성시에게 930,640원을, 피고 태우 및 피고 원일전선에게 247,961,86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2015. 4. 1.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이 법원 2015카합80264호로 사해행위취소권에 기한 채권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태우 및 피고 원일전선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채권에 관하여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5. 4. 1. 원고로부터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제2근저당권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4카단201833호로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5. 4. 1. 원고로부터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1,000만 원을 공탁하게 하고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같은 날 위 결정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호증의 1 내지 6, 갑가 제2호증의 1 내지 7, 갑가 제3호증의 1

내지 6, 갑가 제4호증의 1 내지 6, 갑가 제5호증, 갑가 제6호증의 1, 갑가 제7호증의 1, 갑가 제8호증의 1, 갑가 제9호증, 갑가 제18호증의 1, 2, 갑가 제19호증, 갑가 제20호증의 1, 2, 갑가 제21호증의 1, 2, 3, 갑가 제24호증의 1, 2, 3, 갑나 제1호증의 1, 2, 갑나 제2호증의 1, 2, 3, 갑나 제3호증의 1, 2, 3, 갑나 제4호증의 1, 2, 3, 을가 제1호증의 1, 2, 을라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A은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로서, 이 사건 제1·2·3수출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 6,371,177,747원(= 629,997,688원 + 3,667,499,537원 + 2,073,680,522원), 이 사건 농협수입보험계약상 보험금 및 이에 관한 채권보전비용 2,065,856,757원(= 2,059,132,130원 + 6,724,627원), 합계 8,437,034,504원(= 6,371,177,747원 + 2,065,856,757원) 및 그 중 이 사건 농협수입보험계약상 보험금 2,059,132,130원에 대하여는 위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4. 10. 25.부터, 이 사건 제1·2·3수출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 6,371,177,747원에 대하여는 위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4. 12. 11.부터, 한편 이 사건 농협수입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8,437,034,504원 중 위 2,065,856,757원(이 사건 농협수입보험계약상 보험금 및 이에 관한 채권보전비용) 및 그 중 이 사건 농협수입보험계약상 보험금 2,059,132,130원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4. 10. 25.부터,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5. 3. 10.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구상채권 중 이 사건 제1·2·3수출보증보험계약에 관한 부분 및 이 사건 농협수입보험계약에 관한 부분을

나누어 '이 사건 제1·2·3구상채권' 및 '이 사건 농협구상채권'이라고 하고, 포괄하여 '이 사건 각 구상채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A, B의 주장 요지 참가인 포스코건설은 2014. 4. 이 사건 B납품계약을, 2014. 5. 이 사건 A납품계약을 각 해지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이 위법·부당하여 그 효력이 없는바, 참가인 하나은행은 이 사건 제1·2·3지급보증약정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및 선급금환급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참가인 포스코건설에게 위 각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제1·2·3수출보증보험계약상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참가인 하나은행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제1·2·3구상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3) 가) 참가인 포스코건설은 피고 A에게 각 항차별 발주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납기일을 정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납기일을 지나치게 짧게 정한 발주를 지속하였고, 제8항차 및 제8-1항차 발주에서도 피고 A에게 납품물량을 생산하는 데 필요·최소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는바, 제8항차 및 제8-1항차의 납기일 미준수는 피고 A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 없으므로 이 사건 A납품계약의 적법한 해지사유가 될 수 없다.

나) 피고 A은 참가인 포스코건설에게 납품할 제품에 관한 QC 인증 취득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2014. 8.경 QC 인증을 취득하게 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참가인 포스코건설은 위 취득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는바, 위 취득시점보다 앞선 2014. 4.경 피고 A이 QC 인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피고 A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 없으므로 이 사건 B납품계약의 적법한 해지사유가 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Kick-Off 미팅 등

(1) 참가인 포스코건설의 브라질 E 사업단과 피고 A 직원들은 2013. 4. 26. J센터에서 'F Kick-Off 미팅'을 가졌고, 위 미팅의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납기물량에 대한 상세 Spec 및 드럼조장은 납기일 2개월 전에 포스코건설에서 A으로 통보한다.

8. Q/C 인증을 받기 위한 Sample 생산 및 브라질 운송기간 등을 제외한, 인증절차에만 소요되는 기간이 3개월이므로 기타 소요기간을 파악하여 기간 내에 반드시 Q/C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2) 한편 브라질 QC(Quality Control) 인증(이하 'QC 인증'이라고 한다)제도는 브라질 자국 산업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품질인증 제도이고, ANATEL은 통신용 전선 등에 관한 QC 인증기관으로 ANATEL의 QC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통신용 전선은 브라질의 관계 법령상 참가인 포스코건설이 수주한 공사에서 사용할 수 없는바, 참가인 포스코건설은 2013. 4. 9. 구입사양설명회에서 피고 A에게 향후 납품계약시 QC 인증의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고지하였다.

나) 이 사건 A·B납품계약의 체결 등

(1) 참가인 포스코건설과 피고 A은 2013. 5. 9. 이 사건 A·B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참가인 포스코건설의 물품구매계약 일반약관, 구입사양서를 위 각 계약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다.

물품구매계약 일반약관

제3조(납품)

① 매도인은 계약서상의 납기일, 납품시간을 준수하여 계약전량을 납품장소에 현품으로 인도하고, 검수요청을 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검수에 합격하고 매수인에게 수령됨으로써 납품 완료된 것으로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매수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매도인이 납품기한 내 계약서에 명시된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또는 완료하지 못하거나, 매도인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입사양서

2.1.3 INMETRO Q/C 및 ANATEL Q/C 인증 취득

계약자는 Cable의 제작 착수 전 브라질 INMETRO Q/C 및 ANATEL Q/C 인증을 득한 후, POSCO E&C에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중략).. Q/C 인증은 낙찰(13. 4. 19.) 후 4개월 안에(13. 8. 18.)하여야 한다. 만약 상기 기한 내에 Q/C 인증을 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상업계약서에 의거한 계약 행정을 기준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참가인 포스코건설과 피고 A은 그 무렵 각 항차별로 나누어 제품사양, 납품물량, 납기일을 별도로 합의하고,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생산 및 납품일정과 관련하여 제작착수 회의 등을 거치기로

약정하였다.

다) 참가인 포스코건설의 QC 인증 요청

(1) 참가인 포스코건설은 피고 A에게, 2013. 8. 6. 피고 A의 경영악화에 따른 향후 계약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2013. 8. 18.까지 QC 인증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고, 2013. 8. 21. 재차 QC 인증을 촉구하였다.

(2) 참가인 포스코건설과 피고 A은 2013. 11. 15. QC 인증 지연과 관련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피고 A은 위 회의에서 제품별로 2013. 11. 23. 내지 2013. 12. 31.까지 QC 인증을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A은 위 일자까지 QC 인증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후 참가인 포스코건설은 피고 A에게 지속적으로 QC 인증을 촉구하였다.

(3) 피고 A은 2014. 2. 17. 참가인 포스코건설에게 '시료 생산 후 재시험 및 인증서 발급까지의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2014. 8.경 QC 인증서 발급이 예상되어 QC 인증된 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납기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송부하였다.

라) 제8항차 및 제8-1항차 발주

(1) 참가인 포스코건설은 2014. 2. 17. 피고 A에게 '납품물량 List'를 송부하면서 납기일은 '2014. 4. 7. 부산항(FOB)'으로 정하여 제8항차 발주를 하였고, 참가인 포스코건설, 피고 A, 그리고 피고 A에 자재를 공급하는 하도급업체들은 2014. 2. 24. 제8항차 제작착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피고 A은 위 회의에서 납기일 '2014. 4. 7. 부산항(FOB)' 및 관련 납품계획 등을 준수하기로 약정하였다.

(2) 참가인 포스코건설은 2014. 3. 6. 피고 A에게 '납품물량 List'를 송부하면서 납기일은 '2014. 4. 14. 부산항(FOB)'으로 정하여 제8-1항차 발주를 하였다.

마) 참가인 포스코건설과 피고 A의 대책회의 등

(1) 참가인 포스코건설, 피고 A은 2014. 3. 4. 참가인 포스코건설 K사옥에서 'Cable 인증, 납기, 해외구매 지연대책 회의'를 개최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하였다.

F의 A의 QC 인증 지연에 대한 대응 및 방안, 통신 Cable 해외 구매납기, 국내 FOB 물량의 지속적인 지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A 현안상황

① ANATEL 인증 지연

나) 사유: Sample Test 불합격 및 인증비용 미지불

③ 국내 FOB 일정마다 반복되는 납기 지연

2. 협의안

① ANATEL 인증 지연

가) A은 ANATEL 인증을 14. 3. 20.(14. 3. 5.까지 재확인)까지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인정하고, 후속업무를 추진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Cable 구매납기 지연, 후속업무를 추진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가) A은 차후 납기시부터 지정한 항구도착일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불이행으로 인정하고, 후속업무를 추진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참가인 포스코건설은 2014. 3. 25. 피고 A에게 제8항차 납품물량을 2014. 4. 7. 선적하기 위해서는 2014. 3. 25.까지 부산항에 입고되어야 함에도 전혀 입고가 되지 않았으며 2014. 3. 26. 개최하는 대책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3) 참가인 포스코건설은 피고 A에게, 2014. 3. 27. QC 인증을 2014. 3. 31.까지는 완료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4. 4. 2. 재차 납기일 준수 및 QC 인증취득을 요청하면서 불이행시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4) 피고 A은 2014. 4. 8. 참가인 포스코건설에게 제8항차 잔여 납품물량 및 제8-1항차 납품물량 전부의 납기일을 2014. 4. 25.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QC 인증은 2014. 4. 7.로부터 4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QC 인증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공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바) 참가인 포스코건설의 이 사건 A·B납품계약 해지 통보 등

(1) 참가인 포스코건설은 2014. 4. 16. 피고 A에게 2014. 4. 25.까지 부산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컨테이너화물조작장) 도착을 준수하지 못하고, ANATEL 인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위 2014. 4. 25.자로 이를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A·B납품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 및 선금금환급보증금 청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는 '2014. 4. 15.자 계약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 참가인 포스코건설 직원들은 2014. 4. 17. 및 2014. 4. 28. 피고 A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생산라인이 정지되어 있고 원자재인 구리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3) 참가인 포스코건설은 2014. 4. 29. 피고 A에게 제8항차 및 제8-1항차 납품물량의 생산을 강행하더라도 참가인 포스코건설로서는 피고 A의 위 단독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4) 참가인 포스코건설은 2014. 4. 30. 피고 A에게 2013. 4. 19.로부터 4개월 이내에 QC 인증을 취득한다는 약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이 사건 B납품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2014. 4. 29.자 계약해지 최종 통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 A에 도달하였다.

(5) 또한, 참가인 포스코건설은 2014. 5. 15. 피고 A에게 제8항차 납기일인 2014. 4. 25.을 준수하지 못한 계약불이행으로 이 사건 A납품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2014. 5. 14.자 계약해지 최종 통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 A에 도달하였다.

사) 피고 A의 보증금 지급보류 요청 및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 등

(1) 피고 A은 2014. 7. 29. 참가인 하나은행에게 이 사건 A·B납품계약에 관하여 참가인 포스코건설과 원만한 해결이 될 때까지 참가인 포스코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2·3지급보증약정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및 선급금환급보증금의 지급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피고 A은 2014. 10. 7. 참가인 포스코건설에 대하여 제품수령거절, 부당 계약해지 등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하였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1. 26. 참가인 포스코건설에게 이 사건 A·B납품계약의 부당해지 신고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하고, 제5-2항차 납품물량 수령거부 신고에 대하여 '심의절차종료' 처리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다 제1, 2, 4 내지 22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 3, 5, 6, 7,

8, 9, 13,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이 사건 A납품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 포스코건설과 피고 A 사이의 2013. 4. 26.자 Kick-Off 미팅에서 '납기물량에 대하여 납기일 2개월 전에 통보한다'는 내용의 회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소위 계약 전 프로젝트 착수회의의 내용이 이 사건 A납품계약의 일부로 당연히 포섭된다거나 참가인 포스코건설과 피고 A 사이에 합의된 약정사항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참가인 포스코건설과 피고 A은 각 항차별로 나누어 납기일을 별도로 합의하고 필요할 경우 납품일정과 관련하여 제작착수 회의를 거치기로 약정한 점, ③ 피고 A은 제8항차 이전 항차의 각 발주에서도 약정된 납기일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였던 점, ④ 이에 따라 참가인 포스코건설과 피고 A은 2014. 3. 4. 지속된 납기지연에 관한 대책회의까지 하였고, 여기서 피고 A은 향후 약정된 납기일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를 계약불이행으로 인정하고 참가인 포스코건설이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청구 등 후속조치를 취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던 점, ⑤ 참가인 포스코건설은 제8항차 발주에서 납기일을 '2014. 4. 7. 부산항(FOB)'으로, 제8-1항차 발주에서 납기일을 '2014. 4. 14. 부산항(FOB)'으로 각 정하였으나, 피고 A은 위 납기일을 준수하기 위하여 부산항에 입고시켜야 할 시점이 경과할 때까지 납품물량을 입고시키지 못하였던 점, ⑥ 참가인 포스코건설이 납기일을 다시 2014. 4. 25.로 연장시켜주었음에도 피고 A은 이마저도 준수하지 못하였던 점, ⑦ 참가인 포스코건설의 모니터링에 의하면 피고 A은 그 무렵 생산라인이 정지되어 있었고 원자재인 구리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던 점, ⑧ 한편 이 사건 A납품계약의 일체로서 포함되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약관 제18조 제1항 제3호는 피고 A이 납품일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참가인 포스코건설은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 포스코건설이 피고 A에게 '2014. 4. 15.자 계약해지 통보'로써 최고를 하고 '2014. 5. 14.자 계약해지 최종 통보'로써 이 사건 A납품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B납품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A이 참가인 포스코건설에게 2014. 8.경 QC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통보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통보만으로 피고 A의 QC 인증 취득기한을 2014. 8.경으로 연장하는 데 참가인 포스코건설이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B납품계약에서 피고 A의 QC 인증 취득은 필수불가결한 계약조건으로 보이는 점, ③ 참가인 포스코건설은 이 사건 B납품계약 이전부터 피고 A에게 QC 인증의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고지한 점, ④ 이 사건 B납품계약의 일체로서 포함되는 구입사양서 2.1.3은 피고 A이 2013. 8. 18.까지 QC 인증을 취득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⑤ 피고 A은 위 2013. 8. 18.까지 QC 인증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참가인 포스코건설은 그 이후 수차례에 걸쳐 신속한 QC 인증의 취득을 촉구하였던 점, ⑥ 그럼에도 피고 A은 참가인 포스코건설에게 QC 인증의 기한을 2013. 말경 등으로 연장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스스로 설정한 위 기한마저 준수하지 못하였던 점, ⑦ 참가인 포스코건설과 피고 A은 2014. 3. 4. QC 인증 지연에 관한 대책회의까지 하였고, 여기서 피고 A은 2014. 3. 20.까지 QC 인증을 취득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인정하고 참가인 포스코건설이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청구 등 후속조치를 취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역시 준수하지 못한 점, ⑧ 한편 구입사양서 2.1.3은 피고 A이 QC 인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참가인 포스코건설은 이 사건 B납품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 포스코건설이 피고 A에게 '2014. 4. 15.자 계약해지 통보'로써 최고를 하고 '2014. 4. 29.자 계약해지 최종 통보'로써 이 사건 B납품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 A은 8,437,034,504원 및 그 중 2,059,132,13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5.부터, 6,371,177,747원에 대하여는 2014. 12. 11.부터,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8,437,034,504원 중 2,065,856,757원 및 그 중 2,059,132,130원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각 2015. 3. 10.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태우, 원일전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농협수입보험계약은, 피고 A이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등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가 농협은행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예상보험금 상당을 그 지급 이전에 미리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2013. 8. 1. 피고 A의 당좌부도가 발생함으로써 원고는 그 무렵 피고 A에 대하여 사전구상채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는 2013. 8. 14.자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성립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설령 위 사전구상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각 구상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채권이 성립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도 존재하였으며, 실제로 위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2013. 8. 14.자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에 이 사건 각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피고 태우, 원일전선

(1) 피고 A은 2013. 8. 1.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처했을 뿐 2013. 8. 9. 신속한 어음 회수를 통해 부도를 정리하여 경영이 정상화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전구상채권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성립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2013. 8. 1. 이후 2013. 12.경 피고 A과 이 사건 제3수출보증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나아가 농협은행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2014. 10.경까지 1년 넘게 피고 A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전구상채권을 스스로 포기하였다.

(2) 피고 A은 2013. 8. 1. 이후 상당한 기간동안 참가인 포스코건설과 정상적으로 이 사건 A·B납품계약에 따른 거래를 지속하던 중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이고, 피고 A을 비롯한 채권은행들은 FTP를 통해 피고 A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였으며, 나아가 원고 스스로 2013. 12.경 보험금액이 50억 원이 넘는 이 사건 제3수출보증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해 주기까지 하였으므로, 2013. 8. 1. 무렵 이 사건 각 구상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농협수입보험계약상 사전구상채권의 성립 여부

(1)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농협수입보험계약서 제5조 제1항 제7호는 피고 A이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가 농협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예상보험금을 상환하도록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A의 유동성 부족으로 2013. 8. 1. 당좌부도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앞서 보듯 이 사건 농협지급보증약정 및 농협수입보험계약은 피고 A의 수입신용장 발행에 따른 신용 공여, 수출입대금 채무 및 농협은행의 지급보증채무에 관하여 각 체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이 2013. 8. 1.경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무렵 원고가 농협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예상보험금에 관한 기초가 되는 피고 A의 수입신용장 발행과 관련한 수출입거래 등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2013. 8. 1.경 피고 A의 실제 수입신용장 발행 내역이나 관련 수출입거래와 아울러 이에 따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협은행의 지급보증채무 내지 농협은행의 대지급에 따른 손실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반면, 원고가 이로부터 약 4개월 후 2013. 12. 26. 피고 A에게 사전구상금의 지급을 통보하였을 때에는 만기가 도래하거나 도래할 예정인 이 사건 제1·2유산스가 존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그 대지급에 따른 농협은행의 예상손실액 및 원고의 예상보험금이 구체적으로 산정될 수 있어 피고 A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의 내용과 범위도 특정될 수 있었다), 이 사건 농협수입보험계약상 사전구상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서 존재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3. 8. 14. 기준 이 사건 각 구상채권 성립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 등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다만 여기서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나 채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그 채권이나 채무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 또는 채무가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또는 채무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915 판결 참조).

(2) 먼저 이 사건 제3지급보증약정 및 제3수출보증보험계약은 위 2013. 8. 14. 이후 체결되어 이 사건 제3구상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아직 발생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3구상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3) 다만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2지급보증약정 및 제1·2수출보증보험계약, 그리고 이 사건 농협지급보증약정 및 농협수입보험계약은 2013. 8. 14.자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체결되어 이 사건 제1·2구상채권 및 농협구상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존재하고 있었고, 원고가 농협은행 및 참가인 하나은행에게 2014. 10. 24. 및 2014. 12. 10. 각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각 구상채권이 실제로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위 2013. 8. 14. 무렵 가까운 장래에 위와 같은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제1·2구상채권 및 농협구상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고 있었는지 살피건대, 피고 A의 유동성 부족으로 2013. 8. 1. 당좌부도가 발생하고, 피고 A에 대하여 FTP 지침에 따라 2013. 8. 30.부터 FTP가 실시되고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채무 상환유예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다 제18, 19호증, 을가 제2,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관계만으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3. 8. 14. 무렵 이미 위와 같은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먼저 이 사건 제1·2지급보증약정 및 제1·2수출보증보험계약은 피고 A의 참가인 포스코건설에

대한 이 사건 A·B납품계약의 이행채무 및 이에 따른 참가인 하나은행의 참가인 포스코건설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채무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제1·2구상채권 성립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 여부는, 피고 A의 재산 상태는 물론, 향후 피고 A의 이 사건 A·B납품계약상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과 상당히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A·B납품계약은 2013. 5. 29. 체결되었고 참가인 포스코건설은 2013. 7. 25. 피고 A에게 최초로 제1항차 발주를 하였으며 그 납기일이 2013. 8. 25.인바, 최초 제1항차 납기일이 도래하기도 전인 2013. 8. 14. 무렵에 이미 피고 A이 이 사건 A·B납품계약에 좋은 이행을 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나아가 참가인 포스코건설은 피고 A에 대하여 제1항차 이후 제8항차 및 제8-1항차까지 지속적으로 발주를 하였고, 이 사건 A·B납품계약은 그 해지 무렵인 2014. 4.경 내지 5.경까지 존속하였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농협지급보증약정 및 농협수입보험계약은 피고 A의 수입신용장 발행에 따른 신용 공여, 수출입대금 채무 및 농협은행의 지급보증채무에 관한 것인데, 앞서 보듯 피고 A의 2013. 8. 1.자 당좌부도 무렵 피고 A의 수입신용장 발행 내역이나 수출입거래 등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한편 당좌부도는 기업의 유동성 자금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이어서 기업의 채무초과 상태를 곧바로 추인할 수 없고 나아가 당좌부도만으로 사해행위를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며(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5656 판결 참조), 농협은행의 2013. 12. 24.자 수입보험 사고발생통지서에는 피고 A이 2013. 8. 9. 당좌부도를 정리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다) 또한, 피고 A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실시된 FTP는 그 목적 자체가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정상 중소기업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이고, 피고 A은 당시 C등급 내지 D등급 기업과 같은 부실징후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았고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의 사유로 인하여 B 등급 기업으로 분류되어 1년간 채무 상환유예의 지원을 받게 된 것으로, 위와 같은 FTP의 실시가 피고 A의 회생 불가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오히려 그 무렵 채권은행들의 지원을 통하여 종국적으로 경영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라) 나아가 농협은행 및 참가인 하나은행이 채권은행으로 포함되어 있는 FTP 자율협의회는 2013. 12. 5. 피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A납품계약의 선급금 중 30% 부분에 관하여는 이행성보증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고, 참가인 하나은행은 2013. 12. 11. 73억 원이 넘는 지급보증금액으로 이

사건 제3지급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51억 원이 넘는 보험금액으로 이 사건 제3수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처럼 여러 금융기관들 스스로 피고 A을 위하여 향후 수십억 원의 보증금 내지 보험금 부담을 질 수 있는 일련의 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이로부터 약 4개월 전에 이미 피고 A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제1·2구상채권 및 농협구상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정과 양립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구상채권은 피고 태우, 원일전선에 대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소결

그렇다면 피고 태우, 원일전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그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1) 먼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농협지급보증약정, 이 사건 농협수입보험계약 및 이에 대한 피고 B의 연대보증은 2014. 2. 20.자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체결되어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농협구상보증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존재하고 있었다.

2) 다음으로 위 2014. 2. 20. 무렵 가까운 장래에 위와 같은 법률관계에 터잡아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농협구상보증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농협은행은 2013. 12. 24.자로 원고에게 같은 날 만기도래한 이 사건 제1유산스 대금을 대지급하고 2014. 1. 14. 만기도래하는 이 사건 제2유산스 대금을 대지급할 예정으로 이 사건 농협수입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실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수입보험 사고발생통지를 하였는바, 이 사건 농협구상채권이 발생하게 된 근원이 되는 보험사고는 2014. 2. 20. 이전에 이미 발생한 상태였다.

나) 위 수입보험 사고발생통지에 따라 원고는 2013. 12. 26. 피고 A에게 이 사건 농협수입보험계약

제5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사전구상금의 지급을 통보하였고, 다만 피고 A에 대하여 FTP가 실시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의 요청에 따라 그 채권보전조치를 유예하여 둔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2014. 2. 20.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참가인 하나은행은 2014. 3. 10.경 원고에게 피고 A이 기업일반자금회전대출 약 29억 9,700만 원에 관하여 14일 이상 이자연체를 하여 FTP의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통지하였고, 이후에도 피고 A은 FTP 지침 또는 FTP 자율협의회가 의결한 지원 조건이나 스스로 마련한 자구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피고 A에 대한 FTP는 2014. 9. 26.경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3) 한편 원고가 2014. 10. 24. 농협은행에게 이 사건 농협수입보험계약상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에서 본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농협구상채권이 실제로 성립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1) 2014. 2. 20. 기준 피고 B의 재산 상태 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나) 갑 제24호증의 3,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1 내지 37,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2. 20.경 피고 B이 소유하고 있었던 적극재산인 부동산들 및 위 부동산들의 감정평가액, 매매가, 공시지가와 피고 B의 소극재산으로서 이 사건 제2부동산 및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상 청구금액은 다음 표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용인시 처인구 L 답 5,904m ²	3,438,809,000
2	용인시 처인구 M 전 423m ²	

1	용인시 처인구 ㄴ 답 5,904m ²	3,438,809,000
3	용인시 처인구 N 답 975m ²	
4	용인시 처인구 ○ 전 9,937m ²	
5	용인시 처인구 P 전 2,579m ²	
6	용인시 처인구 Q 답 3,203m ²	525,292,000
7	용인시 처인구 R 답 962m ²	157,768,000
8	용인시 처인구 S 답 1,088m ²	178,432,000
9	용인시 처인구 ㅊ 전 41m ²	77,031,000
10	용인시 처인구 U 전 124m ²	
11	용인시 처인구 V 전 813m ²	
12	용인시 처인구 W 전 889m ²	
13	용인시 처인구 X 전 28m ²	
14	용인시 처인구 Y 전 608m ²	
15	용인시 처인구 Z 전 2,789m ²	89,019,000
16	용인시 처인구 AA 답 327m ²	125,856,000
17	용인시 처인구 AB 전 407m ²	462,974,000
18	용인시 처인구 AC 전 473m ²	1,645,367,000
19	용인시 처인구 AD 답 628m ²	
20	용인시 처인구 AE 답 856m ²	
21	용인시 처인구 AF 전 1,921m ²	
22	용인시 처인구 AG 전 2,003m ²	
23	용인시 처인구 AH 답 4,083m ²	
24	용인시 처인구 AI 답 1,289m ²	
25	용인시 처인구 AJ 전 281m ²	
26	용인시 처인구 AK 전 2,638m ²	
27	용인시 처인구 AL 전 800m ²	
28	용인시 처인구 AN 전 4,172m ²	916,984,000
29	용인시 처인구 AO 전 5,524m ²	
30	용인시 처인구 AP 전 1,993m ²	
31	용인시 처인구 AQ 전 1,583m ²	
32	화성시 AR 답 1,693㎡	364,719,000
33	화성시 AS 임야 100㎡	289,689,000
34	화성시 AT 답 1,170㎡	152,370,000
35	화성시 AU 답 2,651㎡	166,000,000

1	용인시 처인구 L 답 5,904m ²	3,438,809,000
36	용인시 처인구 AW 전 942m ²	234,000,000
37	화성시 AX 전 99m ²	530,200,000
38	서울 서초구 AY아파트 102동 2301호	330,000,000
39	이 사건 제2부동산	13,285,800
합계	10,834,283,800	
소극재산		
순번	내역	금액(원)
1	중소기업은행	1,951,513,286
2	우리은행	2,181,359,539
3	2011기보그린하이텍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500,000,000
4	기술신용보증	6,750,000,000
5	한국전력공사	89,854,110
6	국민은행	1,908,955,270
7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2,479,494,540
8		23,607,164,832
9	원고	2,065,856,757
합계	43,534,198,33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순번 36번 내지 39번 부동산 가액이 불분명하거나 미상이고, 가압류등기상 청구금액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의 정확한 시점이나 채권액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점도, 가압류등기상 청구금액 및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액의 합계액이 무려 435억 원을 넘는 점을 알 수 있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액과 아울러 위 435억 원의 채무액 중 일부가 2014. 2. 20. 이후에 성립한 채무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 B의 소극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2014. 2. 20. 기준으로 피고 B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추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피고 B이 위와 같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2014. 2. 20.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채권최고액이 9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가치 전부를 피고 C 1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 책임재산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 C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에 관한 판단

그러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는 현재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 그 원상회복은 위 등기를 말소하는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태우, 원일전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재판장판사오선희

판사강건

판사장태영

별지

1) 이 사건 제1·2수출보증보험계약 및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제3수출보증보험계약에 대하여 원고는 소장에서 이와 반대의 순서로 '3·2·1차 수출보증보험'이라고 약칭하였다.

2) 제5조(사건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과 보증인은 즉시 이를 공사에 통지하고 공사로부터 통지·최고 등이 없더라도 공사가 부담하는 보험계약자 앞 지급 예상 보험금에 대하여 공사의 보험금 지급 전에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8. 제2조 제1항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사고발생을 통지한 경우

3) 한편 피고 A, B은 이 사건 농협수입보험계약에 관한 이 사건 농협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다.